

#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정관

제정 2019.01.15.

개정 2021.02.26.

개정 2023.02.17.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도시재생협치포럼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Urban Regeneration Governance Forum"로, 약칭은 "KURGF"라고 한다.

###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도시재생의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치에 기반한 지역주도 및 현장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도시재생 참여 주체 간의 협력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활동가, 중간조직, 학계 등의 도시재생 역량강화 활동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359에 두며, 전국 각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주사무소의 이전 시 정관을 변경 후 등기 한다.
- 분사무소 설치·이전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다.

### 제4조(사업)

-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도시재생 사업의 가치와 방향 정립·공유, 현안이슈에 대한 정책대안 발굴 등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현장 성과와 노하우 공유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 사업
  -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학계, 민간기업, 활동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등 관계 기관 간 실질적 협력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도시재생 및 관련분야 역량강화 관련 교육, 연수 사업
  - 도시재생 및 관련분야 포럼,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개최 사업
  - 도시재생 및 관련분야 홍보, 조사, 계획, 학술, 출판, 용역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수익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1.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개인으로 하며 회원은 정회원(기관회원, 개인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업, NGO, 활동가, 도시재생중간지원센터, 도시재생 관련 단체 등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한 단체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제2조 목적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단체로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4.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가입 의사를 밝히고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5.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 후,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② 특별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걸쳐 법인의 재정 및 정책연구 등을 지원, 후원하는 회원을 말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자문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으로, 법인이 공개하는 자료 및 출판물, 정보 등을 제공받으며 희망에 따라 법인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에 구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본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인을 빙자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및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권한정지,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15인(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이내로 둔다.
5. 감사 1인 이내로 둔다.

###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또한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 궐위 시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연임은 2회에 한한다.
- ③ 임원은 임기 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필하고,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중 1인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행하고, 직무대행 부이사장 유고시 부이사장 1인이 직무대행을 대행하며, 부이사장 모두 유고 및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지체 없이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8.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 제20조의 1 (회원의 결의권)

- ① 정회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모든 의결은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2. 총회에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전자우편 및 sns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에는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재개정 및 위원회 설치, 운영, 임면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7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

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기부금품 공개)** 연간 기부금품 및 기부금, 후원금 등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등은 홈페이지 및 공개문서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제7장 사무부서 및 위원회

### 제37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상임이사 1인과 사무국장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 이사회회의 의결을 통해 본 법인 목적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선임,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은 본 법인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 목적을 위해 특별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 의결 하에 비회원도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④ 각 위원회는 이사회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간 활동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제8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3. 변경될 정관(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임원임기)** 정관 제13조(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17일 취임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